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21. 2. 16.(화),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공지사항 및 투표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 의 사 항】

1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3
---	--------------------------------	---

심 의 사 항

1.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가. 제안사항

「대곡천 암각화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광역시에서 <대곡천 암각화군(신청 유산명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신청하였음
- 본 위원회 2020년 제2차 회의(2020.2.18.)에서 “보류”의결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9조

-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유산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3.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및 계획
 4. 보존 관리 계획

다. 유산 심의 경과

- 대곡천 암각화군(신청명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 등재추진 경과
 - 2010.1월 : 잠정목록 등재
 - 2020.2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보류”
 - 2021.1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재신청